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7. 23 | 통권 제25호(2012-13)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30일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2012년의 4,580원에 비하여 6.1%(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의결함.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합리적 모색과는 별도로 최저임금의 수준, 특히 국제비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OECD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방식(OECD)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방식
 - 최저임금은 상대적 수준과 절대적 수준으로 나누어 국제비교할 수 있음(표 1 참조).
 -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을 임금의 평균값 또는 중위값으로 나눈 수치로서,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절함.
 - 절대적 수준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음. ① 명목임금은 자국통화 기준 최저임금을 대미환율

(US\$)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고, ② 실질임금은 자국통화 기준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대미환율이나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환율로 나누어 비교한 것임.

〈표 1〉 최저임금 수준의 비교방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임금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	
	임금 중위값에 대비한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명목 최저임금	
	실질 최저임금	대미 환율
		구매력평가(PPP) 환율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추적
 - OECD 통계 작성은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의 임금평균값(mean) 또는 임금중위값(median)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OECD 발표에 활용된 우리나라의 원자료 및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표 2 참조).
 - ① 원자료: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에서 농림어업을 제외한 비

농·민간 전 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의 평균값 또는 중위값과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

② 작성방법 :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월임금총액(평균값 또는 중위값)

- 원자료와 작성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OECD 발표와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됨.

〈표 2〉 OECD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산출방식(우리나라)

월환산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근로시간을 고려한 월환산 최저임금으로 전환 즉, 월환산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 × 226
월임금 평균값 또는 중위값	비농 전 산업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정액+초과+특별)의 평균값(mean) 또는 중위값(median)

- OECD 국제비교의 주요 문제점
 - OECD 발표자료에서 활용된 조사통계에서 조사대상의 한계가 고려되지 않거나, 그동안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같은 근로기준의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또는 수준의 증가율이 높게 추정됨.
 - ① 조사대상의 한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조사대상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임. 반면 2000년 11월 24일 이후 최저임금법이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분석자료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변경되어야 함.
 - ② 근로기준 변경: 2004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

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도 이전의 월평균 지불근로시간인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됨.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일정이 연도, 산업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여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OECD처럼 226시간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출해서는 안 됨.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

- 월(환산)임금 비교는 통계적 왜곡을 초래함.
 - 월환산 최저임금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도, 산업 및 규모에 따라 226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달리 적용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OECD에서는 최저임금을 월환산하는 데 226시간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는 분자인 월환산 최저임금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것임.
 - 분모인 월임금총액도 단축된 법정근로시간(5인 미만 제외, 월평균 지불근로시간 209시간)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일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5인 미만 사업체 등이 제외되어 실제보다 과대평가됨.
 - 다만, 월(환산)임금 비교방식은 유급인 주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월임금총액에서 유급주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없음.
- 시간당 임금(최저임금, 임금총액, 통상임금) 비교가 보다 적절
 -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확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임금근로자(또는 전 일제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임

금총액)과 비교함이 보다 적절함.

- 본고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 및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값 및 중위값을 집계하고 나누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산출함.
- 다만, 근무형태에 대한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이외에 전일제(full-time)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산출할 수 없음.

■ 분석 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국가에서 중간 정도임.

- 2010년 기준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38~39%, 그리고 중위값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48~49%로서, OECD에서 발표된 33~41%에 비하여 5~8%p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3 참조).

☞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분배 지표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또는 임금총액 중위값에 대비한 시간당 최저임금 비율이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로 현재 활용되고 있음. 2011년 현재 각각의 수치는 0.482(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및 0.500(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임.

- 우리나라의 수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국제비교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10년 기준 OECD 평균값을 상회하거나(평균값 대비 기준, 부표 1 참조) 또는 동등한 수준임(중위값 대비 기준, 부표 2 참조).
- 향후 OECD 통계 작성지침에 부합한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업임금의 범위를 고려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중위값 및 평균값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으로 산출하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작성이 요망됨.

〈표 3〉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추이

	OECD 발표 (월임금총액)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 통상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시간당 임금총액)			
	평균값 (상용)	중위값 (상용)	평균값 (전체)	중위값 (전체)	평균값 (전체)	평균값 (전일제)	중위값 (전체)	중위값 (전일제)
2001	0.24	0.28	-	-	0.31	0.31	0.39	0.38
2002	0.25	0.30	-	-	0.32	0.32	0.41	0.41
2003	0.25	0.30	-	-	0.31	0.31	0.40	0.40
2004	0.26	0.31	-	-	0.32	0.32	0.41	0.40
2005	0.28	0.33	-	-	0.35	0.34	0.45	0.44
2006	0.28	0.35	-	-	0.36	0.36	0.45	0.45
2007	0.31	0.37	0.35	0.46	0.38	0.37	0.49	0.47
2008	0.31	0.39	0.36	0.46	0.38	0.38	0.49	0.48
2009	0.33	0.41	0.39	0.50	0.40	0.39	0.51	0.48
2010	0.33	0.41	0.38	0.49	0.39	0.37	0.49	0.48
2011	-	-	0.38	0.48	0.38	0.37	0.50	0.47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비교

-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산출방식(OECD)
 - OECD는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음(표 4 참조).
 - ①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 구매력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조정된 실질 최저임금을 명목대미환율(US\$)로 나누어 산출한 실질 최저임금(부표 3 참조)
 - ② PPP\$ 기준 실질 최저임금: 구매력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조정된 실질 최저임금을 PPP환율(구매력평가환율, 2005년 기준)로 나누어 산출한 실질 최저임금(부표 4 참조)

〈표 4〉 OECD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산출방식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	(최저임금/소비자물가지수) 명목대미환율(US\$)
PPP\$ 기준 실질 최저임금	(최저임금/소비자물가지수) 구매력평가환율(PPP\$)

- 실질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산출 및 해석상의 주의
 - 우선,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명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3.56임. 그러나 이를 실질 기준으로 살펴보면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3.06, PPP\$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4.49로 산출됨(표 5 참조).
 - 그중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는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그런데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실질 최저임금을 명목대미환율(US\$)로 나누어 산출됨에 유의하여야 함.
 - 따라서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른 환율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예컨대, 2007년에 대비한 2010년의 실질 최저임금(원화 기준)은 명백히 높는데, 원화의 평가절하로 US\$ 기준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2007년 \$3.57에서 2010년에 \$3.06로 오히려 낮아짐.

〈표 5〉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최저임금 (명목, 원)	A	1,688	1,943	2,158	2,353	2,620	2,927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증가율, %)		-	(15.1)	(11.1)	(9.0)	(11.3)	(11.7)	(5.9)	(12.3)	(8.3)	(6.1)	(2.8)	(5.1)
소비자물가 (2005=100)	B	84.9	88.3	90.8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120.7
최저임금 (실질, 원)	C=A/B	1,989	2,201	2,377	2,506	2,693	2,927	3,033	3,321	3,437	3,546	3,540	3,579
대미환율 (명목, US\$)	D	1,131	1,291	1,251	1,192	1,145	1,024	955	929	1,102	1,277	1,156	1,108
최저임금 (명목, US\$)	E=A/D	1.49	1.51	1.73	1.97	2.29	2.86	3.25	3.74	3.42	3.13	3.56	3.90
대미환율 (PPP\$)	F(2005년)	789	789	789	789	789	789	789	789	789	789	789	789
최저임금 (실질, US\$)	G=C/D	1.76	1.70	1.90	2.10	2.35	2.86	3.18	3.57	3.12	2.78	3.06	3.23
최저임금 (실질, PPP\$)	H=C/F	2.52	2.79	3.01	3.18	3.41	3.71	3.84	4.21	4.36	4.49	4.49	4.54

주: 2011년 수치는 OECD 방법론에 근거하여 시계열을 연장한 것임.

요약 및 정책과제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의 시간당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비교가 보다 적절함.
-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실질 최저임금은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명목대미환율(US\$) 또는 구매력평가환율(PPP\$)에도 크게 영향을 받음.

- 특히 US\$ 표시 실질 최저임금은 최근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지기도 함. 이는 자국민의 관점에서 특별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제비교로 보다 적절한 지표인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치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이는 향후 최저임금법의 준수 및 규범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시사함.

〈부표 1〉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임금 평균값 대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0.50	0.50	0.50	0.50	0.50	0.50	0.46	0.46	0.45	0.45	0.45
벨기에	0.46	0.45	0.45	0.45	0.44	0.44	0.43	0.43	0.44	0.44	0.45
캐나다	0.38	0.37	0.36	0.36	0.36	0.36	0.36	0.36	0.37	0.38	0.39
체코	0.27	0.30	0.31	0.32	0.33	0.33	0.34	0.33	0.30	0.30	0.29
에스토니아	0.26	0.27	0.28	0.30	0.32	0.31	0.29	0.28	0.32	0.34	0.34
프랑스	0.45	0.46	0.46	0.47	0.47	0.48	0.49	0.48	0.48	0.49	0.48
그리스	0.37	0.36	0.36	0.34	0.32	0.32	0.31	0.31	0.33	0.33	0.33
헝가리	0.28	0.39	0.43	0.37	0.36	0.36	0.36	0.35	0.35	0.35	0.35
아일랜드	0.59	0.44	0.43	0.43	0.45	0.46	0.44	0.45	0.44	0.43	0.44
일본	0.28	0.28	0.29	0.29	0.30	0.29	0.30	0.30	0.30	0.32	0.32
한국	0.22	0.24	0.25	0.25	0.26	0.28	0.28	0.31	0.31	0.33	0.33
룩셈부르크	0.33	0.33	0.33	0.34	0.34	0.34	0.34	0.34	0.34	0.35	0.35
멕시코	0.21	0.20	0.20	0.19	0.19	0.19	0.19	0.18	0.18	0.18	0.19
네덜란드	0.45	0.44	0.45	0.44	0.43	0.42	0.42	0.41	0.41	0.41	0.42
뉴질랜드	0.45	0.45	0.46	0.46	0.47	0.47	0.49	0.49	0.51	0.52	0.51
폴란드	0.33	0.34	0.34	0.35	0.35	0.34	0.33	0.31	0.34	0.37	0.37
포르투갈	0.35	0.35	0.36	0.36	0.37	0.37	0.35	0.36	0.36	0.37	0.39
슬로바키아	0.34	0.35	0.34	0.36	0.35	0.35	0.35	0.35	0.34	0.36	0.36
슬로베니아	-	-	-	-	-	0.44	0.44	0.43	0.42	0.40	0.47
스페인	0.34	0.34	0.33	0.33	0.33	0.35	0.35	0.36	0.35	0.35	0.35
터키	0.27	0.27	0.32	0.31	0.40	0.40	0.38	0.38	0.38	0.38	0.35
영국	0.34	0.33	0.35	0.35	0.36	0.37	0.37	0.38	0.38	0.38	0.38
미국	0.29	0.27	0.26	0.26	0.25	0.25	0.24	0.24	0.25	0.27	0.28
라트비아	0.31	0.34	0.32	0.33	0.35	0.31	0.27	0.27	0.30	0.39	0.40
리투아니아	0.36	0.36	0.36	0.36	0.38	0.37	0.34	0.32	0.32	0.36	0.37
루마니아	0.20	0.29	0.29	0.34	0.33	0.31	0.29	0.26	0.30	0.32	0.30
OECD 평균	0.35	0.35	0.35	0.35	0.36	0.36	0.35	0.35	0.36	0.37	0.37
한국수정1 ¹⁾	-	-	-	-	-	-	-	0.35	0.36	0.39	0.38
한국수정2 ²⁾	-	0.31	0.32	0.31	0.32	0.35	0.36	0.38	0.38	0.40	0.39

주: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2)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총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부표 2〉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임금 중위값 대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0.58	0.59	0.58	0.58	0.58	0.58	0.54	0.55	0.52	0.54	0.54
벨기에	0.53	0.52	0.52	0.51	0.51	0.51	0.50	0.50	0.51	0.51	0.52
캐나다	0.41	0.41	0.40	0.40	0.40	0.40	0.41	0.40	0.41	0.43	0.44
체코	0.32	0.35	0.37	0.37	0.38	0.39	0.40	0.38	0.36	0.36	0.35
에스토니아	0.33	0.33	0.35	0.38	0.40	0.38	0.35	0.34	0.39	0.41	0.41
프랑스	0.56	0.58	0.58	0.58	0.59	0.60	0.61	0.60	0.60	0.61	0.60
그리스	0.47	0.46	0.46	0.45	0.44	0.45	0.45	0.46	0.48	0.48	0.49
헝가리	0.37	0.51	0.57	0.48	0.48	0.48	0.49	0.48	0.48	0.48	0.47
아일랜드	0.68	0.52	0.51	0.51	0.53	0.54	0.52	0.53	0.52	0.51	0.52
일본	0.32	0.32	0.33	0.33	0.34	0.34	0.34	0.34	0.35	0.36	0.37
한국	0.26	0.28	0.30	0.30	0.31	0.33	0.35	0.37	0.39	0.41	0.41
룩셈부르크	0.40	0.40	0.40	0.41	0.41	0.42	0.41	0.41	0.41	0.42	0.42
네덜란드	0.51	0.50	0.50	0.50	0.49	0.48	0.47	0.47	0.47	0.47	0.47
뉴질랜드	0.50	0.51	0.52	0.53	0.53	0.54	0.56	0.57	0.59	0.59	0.59
폴란드	0.40	0.42	0.42	0.43	0.42	0.41	0.41	0.39	0.42	0.45	0.45
포르투갈	0.49	0.49	0.51	0.51	0.52	0.53	0.51	0.51	0.52	0.54	0.56
슬로바키아	0.42	0.43	0.42	0.45	0.44	0.43	0.45	0.44	0.43	0.45	0.46
슬로베니아	-	-	-	-	-	0.52	0.52	0.51	0.50	0.49	0.58
스페인	0.43	0.43	0.42	0.41	0.42	0.44	0.44	0.46	0.44	0.44	0.44
터키	0.50	0.52	0.61	0.58	0.75	0.75	0.73	0.72	0.71	0.71	0.67
영국	0.41	0.40	0.43	0.42	0.43	0.45	0.45	0.47	0.46	0.46	0.46
미국	0.36	0.35	0.34	0.33	0.32	0.32	0.31	0.31	0.34	0.37	0.39
라트비아	0.42	0.46	0.43	0.44	0.48	0.41	0.37	0.36	0.41	0.52	0.54
리투아니아	0.47	0.46	0.46	0.46	0.48	0.47	0.42	0.40	0.39	0.44	0.45
루마니아	0.28	0.42	0.42	0.49	0.47	0.45	0.42	0.38	0.41	0.46	0.44
OECD 평균	0.43	0.44	0.45	0.45	0.46	0.46	0.46	0.45	0.46	0.48	0.48
한국수정1 ¹⁾	-	-	-	-	-	-	-	0.46	0.46	0.50	0.49
한국수정2 ²⁾	-	0.39	0.41	0.40	0.41	0.45	0.45	0.49	0.49	0.51	0.49

주: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작성
 2)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총액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부표 3〉 명목대미환율(US\$) 기준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7.00	6.19	6.57	7.94	9.16	9.59	9.32	10.69	10.53	9.91	11.61
벨기에	6.75	6.56	6.97	8.34	9.10	9.08	9.13	10.09	10.85	10.64	9.99
캐나다	5.04	4.78	4.66	5.15	5.55	6.02	6.57	7.01	7.34	7.25	8.34
칠레	1.16	1.03	0.97	0.98	1.15	1.27	1.38	1.42	1.42	1.41	1.59
체코	0.69	0.84	1.09	1.37	1.57	1.77	2.00	2.24	2.51	2.22	2.19
에스토니아	-	-	-	-	18.45	19.24	20.74	25.46	29.80	28.33	26.24
프랑스	6.39	6.33	6.74	8.22	9.35	9.72	10.05	11.09	11.89	11.47	10.86
그리스	2.80	2.69	2.88	3.50	3.93	4.02	4.17	4.66	5.08	5.04	4.67
헝가리	0.69	0.98	1.30	1.42	1.56	1.65	1.65	1.84	1.95	1.65	1.57
아일랜드	6.12	5.86	6.19	7.50	8.84	9.24	9.23	10.64	11.17	11.09	10.67
이스라엘	-	-	-	-	-	-	-	-	5.75	5.08	5.20
일본	5.93	5.35	5.26	5.70	6.12	6.03	5.73	5.70	6.54	7.49	8.16
한국	1.76	1.70	1.90	2.10	2.35	2.86	3.18	3.57	3.12	2.78	3.06
룩셈부르크	7.21	7.25	7.60	9.45	10.38	10.61	10.64	11.83	12.49	12.35	11.70
멕시코	0.59	0.60	0.59	0.52	0.50	0.52	0.52	0.52	0.50	0.41	0.44
네덜란드	6.62	6.54	6.96	8.43	9.21	9.08	9.15	10.06	10.80	10.45	9.99
뉴질랜드	3.82	3.55	3.94	5.13	6.06	6.61	6.32	7.64	7.55	6.89	7.96
폴란드	1.02	1.16	1.14	1.25	1.32	1.51	1.65	1.87	2.49	2.10	2.18
포르투갈	1.97	1.93	2.04	2.42	2.67	2.68	2.70	3.00	3.31	3.35	3.32
슬로바키아	0.64	0.63	0.73	0.99	1.13	1.22	1.31	1.68	1.94	2.07	2.03
슬로베니아	2.61	2.50	2.62	3.14	3.49	3.57	3.63	3.92	4.29	4.19	4.71
스페인	2.64	2.52	2.63	3.12	3.51	3.67	3.77	4.22	4.57	4.52	4.29
터키	2.44	1.07	0.93	1.00	1.37	1.52	1.41	1.54	1.52	1.31	1.36
영국	5.90	5.81	6.49	7.23	8.58	8.91	9.22	10.30	9.44	8.08	7.87
미국	5.84	5.68	5.59	5.47	5.32	5.15	4.99	5.14	5.59	6.24	6.49
OECD 평균	3.72	3.55	3.73	4.36	5.44	5.65	5.77	6.51	6.90	6.65	6.66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부표 4〉 구매력평가환율(PPP\$, 2005년) 기준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8.70	8.63	8.71	8.82	8.97	9.05	8.91	9.20	9.04	9.16	9.12
벨기에	8.15	8.15	8.23	8.21	8.15	8.11	8.09	8.19	8.23	8.51	8.39
캐나다	6.16	6.09	6.03	5.94	5.95	6.01	6.14	6.20	6.45	6.83	7.08
칠레	1.88	1.95	2.01	2.04	2.09	2.13	2.19	2.23	2.23	2.37	2.43
체코	1.85	2.24	2.48	2.70	2.82	2.97	3.16	3.18	2.99	2.96	2.92
에스토니아	-	-	-	-	29.58	30.83	32.92	37.06	40.58	40.61	39.44
프랑스	7.51	7.66	7.76	7.89	8.15	8.47	8.68	8.77	8.79	8.94	8.88
그리스	4.21	4.21	4.28	4.34	4.44	4.52	4.65	4.77	4.86	5.08	4.93
헝가리	1.52	2.19	2.60	2.48	2.47	2.56	2.70	2.62	2.61	2.59	2.54
아일랜드	6.58	6.48	6.51	6.58	7.05	7.35	7.29	7.70	7.55	7.90	7.98
이스라엘	-	-	-	-	-	-	-	-	5.55	5.37	5.23
일본	4.94	5.01	5.09	5.10	5.11	5.13	5.14	5.18	5.22	5.41	5.53
한국	2.52	2.79	3.01	3.17	3.41	3.71	3.84	4.21	4.36	4.49	4.49
룩셈부르크	8.21	8.50	8.47	8.78	8.78	8.95	8.90	9.07	8.95	9.33	9.27
멕시코	0.78	0.79	0.79	0.79	0.79	0.79	0.80	0.80	0.79	0.78	0.79
네덜란드	8.02	8.16	8.25	8.33	8.28	8.14	8.14	8.20	8.22	8.39	8.42
뉴질랜드	5.48	5.50	5.55	5.76	5.96	6.12	6.35	6.77	6.99	7.18	7.19
폴란드	2.37	2.54	2.49	2.60	2.59	2.61	2.73	2.78	3.21	3.50	3.52
포르투갈	3.13	3.15	3.16	3.14	3.14	3.15	3.15	3.21	3.31	3.52	3.67
슬로바키아	1.73	1.78	1.94	2.13	2.15	2.23	2.29	2.43	2.43	2.63	2.71
슬로베니아	3.96	4.14	4.30	4.44	4.59	4.70	4.74	4.69	4.79	4.93	5.81
스페인	3.74	3.69	3.65	3.61	3.70	3.86	3.93	4.03	4.08	4.25	4.24
터키	1.83	1.58	1.69	1.80	2.35	2.45	2.43	2.41	2.38	2.44	2.46
영국	6.13	6.34	6.81	6.96	7.36	7.70	7.88	8.09	8.07	8.15	8.00
미국	5.84	5.68	5.59	5.47	5.32	5.15	4.99	5.14	5.59	6.24	6.50
OECD 평균	4.58	4.66	4.76	4.83	5.97	6.11	6.25	6.54	6.69	6.86	6.86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jjh@kli.re.kr / 02-3775-5556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 02-3775-5583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